

# 사회부패와 생태부패의 비교연구: 기독교 생태윤리적 접근\*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and Ecological  
Corruption: A Focus on the Christian ecological approach

김 영 중(Kim, Young Jong)\*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comparative study of social and ecological corruption in terms of Christian ethics.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social corruption in Korea seriously threatens the healthy democratic development because of various dysfunction of the corruption phenomena by influencing th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mechanism of the systems.

In this paper, the author observes that the ecological corruption also must be one of serious social issues in Korea, so that he compares those two corruption phenomena focusing on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particular,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bove-mentioned corruption can be cleaned up by the innovative Christian ethics and value

Key words: Social corruption, ecological corruption, Christian ethics

---

\* 본 논문은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I.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한계

부패(corruption)는 질병이나 극도의 빈곤과 함께 우리 국가사회에 부여된 최대의 과제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각종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패의 감염도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훼손되며 위기에 이르지 오래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부패와 생태부패의 비교연구를 기독교 생태계의 윤리적 접근을 통한 조명을 함으로서 부패의 통합적인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자료의 문헌연구(library research)를 중심으로 하되 이론적인 연구에 한정하고 실증적인 연구나 경험적인 사회조사는 이 논문에서 제외한다.

## II. 성서적 맥락에서의 부패의 개념

성서에서 부패란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자. 먼저 구약성경에서 부패를 뜻하는 주요한 히브리어들은 미쉬할( $\text{מישׁל}$ ) 모쉬할( $\text{מושׁל}$ ), 마쉬히트( $\text{משׁחית}$ )이다<sup>1)</sup>. 이 세 단어는 모두 육체가 부패하고 상한 것을 뜻한다(사52:14;레22:25;단10:8). 물론 이 단어는 썩는 장소, 즉 무덤을 뜻한다. 그리고 같은 어근의 동사 쇠하트( $\text{משׁח}$ )는 부패되는 것이나 죄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가리킨다.(창6:12;출32:7;호9:9) 신약성경에서는 디아프도라와 프도라가 부패로 번역되었다. 그중에 디아프도라( $\text{διαφθορά}$ )는 말이 6회 나오는데(행2:27, 31; 13:34, 35, 36, 37)<sup>2)</sup>, 언제나 육체가 와해되고 썩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프도라( $\text{Φθορά}$ )와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고전15:42,50), 이것은 또한 물질 세계가 해체되고, 자연계가 변질되는것(롬8:21;골2:22;벤험2:12)과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벤험1:4;2:19)과 종교적인 과멸(갈6:8-여기서는 프도라가 영생과 대조되어 있음, 벤험2:12)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도라란 말 속에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과멸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sup>3)</sup>

1) 자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구약원어대조성경 서울: 로고스, 1993.

2) 성종현, 성서헬라어사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p.116.

### III. 사회부패와 생태부패의 개념적 정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중병에 걸려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구조가 병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병에 걸려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회부패(social corruption)와 생태부패(ecological corruption)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사회부패에 관한 여러 상이한 학설을 요약하여 논의하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1> 사회부패에 관한 주요학설

접근방법 (approach)	주요내용	분석의 단위 (unit of analysis)	대표학자
윤리 및 도덕설 (moral approach)	공직의 비윤리적 및 비도덕적 이용	관료와 사회(관료의 행위)	E. C. Banfield R. Wraith J. T. C. Liu
제도적 접근설 (institutional approach)	제도적 취약성과 사회적 기강의 해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도, 연성국가(Soft State)	S. P. Huntington E. V. Roy G. Myrdal
시장/교환설 (market/exchange approach)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교환관계	관료와 고객집단(관료의 직책)	J. V. Klavern R. O. Tilman A. J. Heidenheimer H. Simon
공익설 (public interests approach)	공익위반의 결과	관료의 행태, 의사결정과정(이해관계 집단의 공존된 이익)	R. W. Friedrichs H. D. Lasswell
기능주의설 (functionalism approach)	발전과정의 부산물	관료제도, 기업가, 사회(후진국)	N. H. Leff J. S. Nye B. F. Hoselitz
후기기능주의 (post-functionalism approach)	보편적 현상과 자기영속성 현상	선진국의 관료제도 후진국의 관료제도	S. B. Werner
권력관계설 (power-relations approach)	관료의 권력남용과 역기능 부산물	관료제와 권력	F. W. Riggs H. H. Werlin J. C. Scott
사회문화적규범 (socio-cultural approach)	사회문화적 환경과 정통의 부산물	사회문화적 환경, 관료제의 역사성	R. Wraith E. Simpkins

자료: 김영중, 부패학, 서울: 숭실대 출판부, 2001, p .38.

#### 3) 미션바이블

위의 <표 3-1>에 의하면 사회부패의 실체는 다양한 개념정의에 의하여 논의된다. 예컨대 윤리 도덕설은 윤리적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부패라고 하며, 공익설은 공익 위반을 부패라고 한다. 그리고 권력설은 권력의 남용을 부패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초점이 부패라는 개념적 정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나 위의 여러 학설을 보완하여 부패에 대한 통전적인 접근인 통합설(integrated approach)에 의한 부패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부패란 복합적 사회현상(complex social phenomena)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지도자들이 국민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위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공직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를 말한다.<sup>4)</sup>

둘째, 생태부패(즉 생태계의 부패)란 생태계의 현상이 물리적 혹은 다른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태부패란 생태윤리학(ecological ethics)<sup>5)</sup> 면에서 인간이 생태계를 무질서하게 남용, 오용, 파괴시킨 부정적인 결과들을 말하며 인류 문명 발전, 환경 보존 및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의 생존 등의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 역기능적인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생태신학이나 생태윤리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생태학적 연대성 실천이다. 창세기의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어떠한 생태론적 갈등도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창조의 통합된 부분이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인간과 다른 창조물 사이의 공통성이 근본적인 일차적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은 빛의 창조, 우주의 창조, 지구의 생물 공간, 비인간적인 생물,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였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근

4) 김 영중, 부패학 서술: 송실대출판부, 2001, pp.1-103.

5) 1970년대 중반, 생태적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의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연계 지우면서 등장하게 된 이 시대 비 마르크스주의 도덕철학 경향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분야의 명칭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소유의 이론가들은 몰트만(J. Moltmann), 콜츠로프스키(Daniel G. Kolzlovsky), 키에페(George H. Kieffer), 틴베르겐(Jan Tinbergen) 등이 주장한다. 주로 세계 문제의 사회-경제적이며 정치적 측면을 다루는 이론가들과는 달리, 생태 윤리학자들은 생태계 상황과 윤리학의 현실간에 빚어진 넓은 격차를 강조하면서, 주관심사를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맞추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명령, 윤리적 가치관과 유리된 지구적 차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무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 윤리학을 대표하는 이들은 오늘날의 생태계 문제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 접근은 미래를 지향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수립하는 윤리학을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

6) 김 영환, “생태계의 위기와 생태신학, 생태윤리”, 한국기독교 연구논총 7집, 서울: 송실대학교 기독교 문화연구소, 1995, pp. 52-82.

대적인 생태관은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의 관리자이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상호 연관이 있다. 인간은 생태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생태계는 인간 없이는 무의미하다. 인간 없는 창조란 하나님의 창조경륜에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권력의 포기(하나님 형상의 기독교적 회복)를 주장한다. 르네상스와 유명론의 하나님 상은 근대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론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땅 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과 초능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근대인간은 힘과 초능력을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다. 인간은 과학 기술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기술적인 착취를 수행한다. 근대와 현대의 산업국가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힘들의 소유와 자연자원의 착취를 통하여 결정된다. 인간은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자연에 대한 힘의 지배와 약탈과 착취를 수행한다.

셋째, 전 창조의 약속된 살림(종말론적 희망의 윤리)을 주장한다. 생태학적 윤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생태학적 새 창조의 약속의 지평을 가지고 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이미 가시화되었고 그의 메시아적 재림과 더불어 온전히 구현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의 메시아적 재림과 더불어 온전히 구현될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실현될 생태학적 평화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sup>7)</sup>

바울은 롬 8:19-21에서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허무한 데”란 자연 속에 있는 재난과 파괴 즉 생태부패를 말한다. 생태부패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다. 바울은 지적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태계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행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cosmos) 만물을 포함한다. 즉 자연과 생태계도 포함된다. 사도요한은 계21:1-4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7) Ibid.

서 내려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더불어 창조는 구속되고 자연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태학적인 유대를 통하여 보게 된다.

### III. 사회부패(social corruption) 와 생태부패(ecological corruption)의 비교

#### 1. 개념적인 차이의 비교

사회부패(social corruption)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어떤 사회조직<sup>8)</sup>에서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저버리고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적 비윤리적인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를 말한다. 반면에 생태부패(ecological corruption)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위반하여 생태계(ecological world)를 파괴, 오용, 그리고 악용하는 일체의 비생태윤리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부패의 주체는 공직자가 대부분이나 일반시민 기업인 등 다양하다. 반면에 생태부패의 주체는 공직자가 포함되나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인이나 개발의 주체가 책임자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부패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위하나 생태부패는 생태계의 질서와 평온,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보존(creative preservation)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의 보호법익은 결국 사회부패의 보호법익을 외연이나 내연적으로 함의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2. 실태의 비교

부패의 역기능은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고 특히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암(social cancer)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먼저 사회부패의

---

8) 예컨대 관료조직에서 공무원이 정치조직에서 정치인이 혹은 다른 공기관(public sector)이나 사기업(private sector)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부패를 총칭한다.

실태를 보면 우리의 부패수준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회부패의 실태를 통계를 통하여 잠깐 살펴보자. 국제투명성 위원회(TI)는 해마다 각국의 부패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정도의 등위는 95년에는 27위, 96년도 27위, 97년도 34위, 98년도 48위, 99년도 50위, 2000년 48위, 그리고 2001년 42위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지수는 지난 3년 동안 4.0/10정도를 맴돌고 있다. 2003년도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33개국의 비교국 중에서 52위를 차지하였고 CPI는 4.3/10를 차지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99.3), 리서취 & 리서취(99.5), 한국갤럽(99.7), 현대리서취(99.11)가 실시한 부패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3%, 91%, 95%, 92%가 각각 부패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1999년 12월에 1년간 일선구청을 통해 민원업무를 이용하였던 민원인 8, 789에 상대로 조사하여 발표한 '반부패지수'에 의하면 민생분야(예: 건설, 위생, 세무 등)에서 평균 74.8%에 이르고 있다. 이제 부패가 삶의 방식(modus operandi)이 되어버린 것 같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범람된 부패현상은 실제공간에서만이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부패의 감염도가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요약하면 사회부패는 국가사회의 기본적인 조직기능을 저하시키고, 정치행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적이다. 이 부패는 실제공간에서 인위적인 일탈행태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서 이제는 실제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패현상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태부패의 현황은 생태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

첫째, 수자원 생태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이다.<sup>9)</sup> 지구상에는 13억8천6백만Km<sup>2</sup>의 물이 존재하며, 이는 해수와 육수로 나뉘며 그 외 소량의 물이 대기 중에 존재한다. 그 중 바닷물이 97%인 13억3천8백만Km<sup>2</sup>, 2%인 2,410만Km<sup>2</sup>는 만년 빙하, 나머지 약 1% 정도는 하천, 염수호, 담수호 등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 대기층에 분포하고 지구상에서 하천이나 강에 있는 전체 수자원량은 0.002%인 약 2,120Km<sup>2</sup>이나 수자원 이용측면에서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지구상의 물의 양은 많지만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공간적 뿐 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한다. 현재 세계 약 1/3의 인구가 물 부족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 부족 상

9) 김 호기, 한림연구보고서 춘천: 한림대학, 2001, pp.1-643.

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과 오염은 광범위한 공중보건 문제, 경제 및 농업개발의 제한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지구적 식량공급을 위협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어 21세기는 석유분쟁의 시대가 아니라 물 분쟁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둘째, 해양은 지구전체 면적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수자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생물생산의 장소임과 동시에 대기와의 상호작용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sup>10)</sup> 해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은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 이용, 개발되어져 왔으나, 특히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와 인간 활동 등으로 각종 오염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오염 상황은 북해, 발트해, 지중해 등 폐쇄성 해역에서 적조발생이 확대되고, 대형선박의 항해, 해저유전개발 등을 수반한 중대 해양오염 위험이 존재하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셋째, 생물다양성의 감소이다. 인간의 산업 활동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지구상의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수는 1000만 내지 8000만종 정도로 과학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 생물종 중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종의 14%, 조류와 포유류의 11%, 어류의 33%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어, 한없이 복잡하고 미묘한 생태계의 균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정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지구상의 생물자원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잠재적 혜택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sup>11)</sup>

넷째, 열대삼림의 파괴이다. 세계는 지역기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삼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삼림의 총 면적은 41억ha이고, 육지(내수면의 면적 함유)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다. 삼림은 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토양보전 및 이산화탄소의 흡수 및 고정을 하는 환경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목재의 공급원이 되며, 의약품의 원료 등 비 목재 생산물의 공급원으로도 사용되는 등 다면적 가치를 지닌 천연자연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지역의 삼림면적은 넓어지거나 또는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열대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삼림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삼림의 파괴는 생물종의 서식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고,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CO<sub>2</sub>)의 흡수 능력을 저하시킴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

10) 김호기, 상계서

11) 상계서

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sup>12)</sup>.

다섯째, 사막화 확대이다. 사막화라 함은 건조, 준 건조, 습기부족지역에서 기후변동 및 인간 활동을 포함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황폐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건조화만이 아니고 토양의 침식과 염성화, 자연식생종류의 감소 등도 사막화 현상 중에 하나이다. '91년 유엔환경계획기구의 사막화 현상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토지면적은 지구상의 전육지의 1/4, 경작가능한 건조지역의 약 70%인 약 36억ha이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연간 US\$420억불에 달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인구도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사막화 원인은 가뭄 등 자연적인 원인 이외에 초지능력을 초과한 가축방목, 토지능력을 무시한 과도한 경작, 연료 및 목재로 사용하는 삼림의 무분별한 벌채, 부적절한 관개농지의 염분집적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인구증가, 대외채무증가, 무역조건 악화 등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사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sup>13)</sup>

2003년 6월 인도에서 연 3주째 4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1500여 명이 일사병과 탈수 증세로 사망했다. 살인적인 폭염이 인도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갑작스런 열대성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남아시아 지역이 몬순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인도에서 269명, 방글라데시 169명, 파키스탄 78명, 네팔에서는 69명이 사망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생태신학자인 김도훈은 생태계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14)</sup>

“지난 수십년간 많은 동식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하였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살아 있는 지구”라는 보고서에서 지나친 인구 증가와 소비로 지구의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의 파괴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단체는 자연 생태계의 건전성과 생물의 다양성 정도를 조사한바 있는데 95년도의 지구는 25년 전인 1970년에 비하여 산림이나 강, 하천의 생물의 30%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간이 매년 1500조원에 해당하는 자연을

12) 상계서

13) 상계서

14) 김도훈, “21 세기 신학으로서의 생태신학”, 로고스 10, 1999, p.1-25.

없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각종 가스들로 인하여, 앞으로의 지구 기후를 심각하게 변형시킬 온실효과가 생기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파괴적인 현상들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화학 비료나 농약으로 인하여 땅이 산성화, 오염되었고, 엄청난 양의 열대림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슈트(P. Schutt)는 “숲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어 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인류는 다양한 생물종으로부터 식량, 약품, 산업생산물 등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산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1992년의 100억불 수준에서 2005년에는 3,05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3년 1,683억원에서 2005년에는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1,000만 ~ 3,000만의 생물종이 연평균 0.5%씩 감소하여 향후 20~30년 내 지구 전체 생물종의 20~30%가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인류의 생존과 존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간의 존속을 위한 유일한 전략임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다양성 보전을 통하여 건강한 인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협약들이 1970년대부터 체결되었다. 특히 1992년 6월의 리우정상회의(United Nation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56개국의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모여 최초로 인구, 환경 및 개발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지속성있는 인간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리우환경선언을 발표하였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사회의 의견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생물종의 자원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지구 생물생태계의 실패는 심각하다. 예컨대 한반도의 경우를 보자.

한반도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1백 91종 가운데 감돌고기 등 37종이 특별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놓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멸종이 확인된 서호납줄갱이 이외에 종어와 개톱치도 국내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조사결과는 지난 90년 한국자연보존협회가 집계한 멸종위기 어류 27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어류의 서식 환경 파괴가 지난 5년 동안 급속히 진행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적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창녕 우포늪이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마을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개발연구원이 2일 열리는 '우포·목포 늪 생태계 보전방향'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포늪은 특히 축산폐수가 원인인 총질소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포늪의 수질오염을 조사한 마산전문대 허창두 교수팀은 "총질소(T-N)의 함량이 목포 늪 아래쪽에서는 1.180ml/ℓ, 목포 늪 동쪽 끝은 1.163ml/ℓ로 나타나는 등 조사지점 8곳이 모두 1.0ml/ℓ 이상이어서 호수 수질환경기준의 4~5급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또 주변마을에서 우포·목포 늪으로 흘러드는 하루 오수량은 이방면 3백75.3입방, 유어면 1백53.9입방, 대함면 2백14.5입방 등으로 나타났다.<sup>15)</sup>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이 생태계의 파괴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지구온난화는 공해의 문제이다. 이것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주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발생된 것이다. 인류가 석탄, 석유, 소량의 천연가스를 연소함으로써, 지구를 둘러싼 온실가스의 천연 담요는 더 두꺼워지고, 더 많은 태양 복사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되어 지구의 기후는 점점 온난해지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2,500명의 과학자들이 결성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간 패널(IPC)’은 다음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6°F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1만 년 간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빠른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농작물을 위협하고, 바다의 수위를 높이고, 전염병을 퍼지게 하는 극단적인 날씨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동식물종들의 절멸을 의미할 수도 있다.”<sup>17)</sup>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수증기 등의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가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지구의 기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업 혁명 이후 화석연료 및 화학물질 사용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

15) 한겨레신문, 1995.5.27

16) 중앙일보, 1997년10월01일

17) <http://myhome.netsgo.com/greeners/environ/Warming.htm>

질소, 프레온가스(CFCs)등의 온실기체가 대량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제2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농업에 의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밝혀졌다. 산업혁명 이전과 1992년의 주요 온실기체 농도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280ppm에서 360ppm, 메탄이 700ppb에서 1,720ppb로 각각 상승하였으며 해수면도 10~25mm 상승된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라인강 유역이 범람하여 강 유역에 인접한 국가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중동의 때 아닌 폭설과, 미국에서의 폭설, 폭우로 인한 기상 재해 등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있는 기상이변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8)</sup>

지역적, 정량적인 예측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략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증가하면 등온선이 이동하여 지구 산림면적 1/3의 식생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식생변화 과정에서 삼림파괴가 발생하여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안지역에서 피해를 받기 쉬운 인구는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고려하지 않고도 현재의 약 4,600만명에서 9,200만명으로 증가 할 것이며, 건조.반건조 지역에서는 수자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나라에도 수자원, 농업, 산림, 생태계, 해안선, 연안구조물 등의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울산을 비롯한 주요 공단지역 토양의 산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공단의 경우에는 공단지역 안의 대기 중 아황산가스농도가 공단외곽지역보다 15배 이상 높아 나무가 자라는 데 큰 지장을 받고 있다.<sup>19)</sup> 산림청 임업연구원 추원규박사팀이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공단을 대상으로 토양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울산공단은 공단외곽지역의 산도가 pH 4.3-5.9인 데 비해 공단 내 지역은 3.8-4.6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단 내 지역토양의 산성화가 외

18) [http://www.uw21.net/uiwang\\_html/sub8/1-9-2a.htm](http://www.uw21.net/uiwang_html/sub8/1-9-2a.htm)

19) <http://www.kyongbuk-tti.or.kr/self/courseware/aab/aab00r45.htm>

광지역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 지역의 수목생육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토양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독성물질인 알루미늄 성분이 활성화, 공단 내 지역의 알루미늄함량은 5백2 ppm으로 공단외광지역의 3백80.5ppm에 비해 훨씬 높아 식물생육과 토양미생물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공단은 또 공단 내 지역의 대기 중 아황산가스농도가 지역에 따라 17.5-30.2ppb에 달해 공단외광지역의 2.8-7.3 ppb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대기 중 아황산가스농도가 10ppb이상이면 수목생육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공단 내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의한 수목 퇴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한편 임해매립지에 자리잡고 있는 공단을 살펴보면 안산 시화공단의 경우, pH가 중성이거나 pH7이 넘는 알칼리성 토양이 많아 수목생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토양이 pH5.5-6.0의 약산성을 띠어야 수목생육에 적합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화공단 일부지역은 또 염분함량이 수목의 염분피해 농도인 0.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염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아산 국가공단 포송지구는 산도가 pH 5.6-6.9로 수목생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지만 유기물과 질소의 함량이 매우 낮아 척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에서 인용한 생태계의 파괴현상의 사례에서 보여준 바 와 같이 생태계는 온통 중병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생태부패는 사회부패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생태위기에 대하여 내쉬(J.A. Nash)는<sup>20)</sup>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연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함께 처음부터 타고난 약탈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고의적이든 불가피한 것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생명형태와 서식처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비와 파괴를 의미한다.” 고 말한다. 이처럼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책임이 크다.

### 3. 원인의 비교

사회부패의 경우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거시

20) J.A. Nash,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이문균 역, 기독교 생태윤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p. 230.

적인 접목으로서 system의 부족이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패의 소지(opportunity)가 많은 경우이다. 둘째는 미시적인 접근으로서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부패에 연루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환경에 근거한 경우로서 부패의 조성자, 지원자, 그리고 유인자적인 환경이 부패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관점이다.

생태부패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악용과 무분별한 착취의 결과적인 산물이다. 특히 생태부패의 경우는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필요악적인 산물(necessary evils)이라는 기능주의적(functionalism) 발전주의자들의 견해가 있고 나아가서는 자연의 정복을 성서적이라고 주장하는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가 생태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된다<sup>21)</sup>.

요약하면 사회 부패나 생태부패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지나친 탐욕적 이기심에서 발생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그리고 창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구속의 도리를 인간과 자연에 적용하는 신학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 4.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와 파괴력(destructive power) 의 비교

사회부패와 생태부패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혹은 인간의 삶의 질의 시스템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파괴력(destructive power)은 필설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예컨대 사회부패는 국민간의 갈등과 불만의 야기로 인한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정치 불신의 비용의 증대로 인한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사회통합의 해체로 인하여 정부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거나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생태부패의 경우는 한 지역에서의 생태부패의 오염은 마치 전염병처럼 지구전체의 확산효과로 인하여 지구전체가 심각한 재난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부패는 본질적으로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배경으로 한 부패의 속성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리고 그 확산효과에 있어서도 우열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21) 김균진에 의하면 기독교의 소위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창1:26-28에 근거하여 자연에 대한 무제한의 지배권을 주장하여 결국 생태계의 파괴와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할 것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p.100-101.

## 5. 대응방안의 비교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삶의 질의 현실에서 생활만족을 하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사회 통계 조사결과<sup>22)</sup>에 의하면<sup>22)</sup> 만 15세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만족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빈부격차, 범죄발생,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9% 였으며 99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 이상이 높아진 통계이다. 이와 같이 사회부패와 생태부패는 공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부패와 생태부패의 대응방안을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수준을 보자.

부패와 삶의 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역비례 관계로 보여진다. 즉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는 삶의 질이 낮고 반대로 부패정도가 낮은 투명한 국가는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보여진다.<sup>23)</sup> 최근에 유엔(UN)이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즉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에 대한 조사대상국 162개국 중 1위가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1위국이었던 캐나다를 제쳤으며 2위는 호주, 그 다음이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미국, 그리고 아이스란드 순이다.<sup>24)</sup> 유엔 산하기간인 개발 프로그램국(UNDP)의 이러한 평가기준은 평균수명(ALE), 교육수준(EL), 그리고 국가의 부(GNP)를 토대로 한 것이며, 선진부국의 경우는 삶의 수준과 만족도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 정부가 영국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나빠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야생 조류 개체군(population)과 같은 환경 요인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sup>25)</sup>을 마련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영국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성장이나 인플

22) 중앙일보, 2004.2.13, p.12. 이 자료는 통계청이 2002.9. 21-30까지 전국 33000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7048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해 발표한 2003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이다.

23) 김영중, “부패문화의 치유: 삶의 질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8-1(2003.1), pp.1-27.

24) '01. 07. 05/ Aftenposten

25) 1998년 11월 28일에 영국의 부수상 존 프레스코트(John Prescott)는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기존의 경제적인 삶의 질 측정 방법에 주택 공급(housing)과 수 질, 대기 오염, 온실 가스 배출, 교통량, 교육 수준, 보건과 같은 변수에 덧붙여 야생 조류가 얼마만큼 번성하고 있는지도 새로운 변수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레이션, 고용 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를 주로 사용해 왔었다. 영국 정부는 새로 사용될 삶의 질 평가 변수에 대한 백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실태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한국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과 비교하여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부패 지수(CPI)는 미국 16위(7.7), 일본 20위(7.1), 한국 40위(4.5), 중국 59위(3.5)의 순서이다. 그리고 고급두뇌의 유출은 미국 49위(8.96), 일본 29위(6.0), 한국 11위(4.70), 그리고 중국 4위(3.53)의 순서로서 한국은 중국보다는 유출이 적은 편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삶의 질에 있어서는 미국 11위(8.92), 일본 26위(6.15), 한국 32위(5.64), 그리고 중국 38위(4.53)으로서 한국은 중국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흥미 있는 것은 국가이미지에 있어서는 미국 5위(8-04), 중국 9위(7.42), 한국 29위(5.60), 그리고 일본 31위(5.51)의 순서로서 중국이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문화적인 요소와 국가적인 홍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한국의 경우 대형 부패사건(예컨대 현직 대통령 자녀가 부패관련으로 사법 처리되는 등)과 대형사고가 수년간에 걸쳐서 크게 보도되고 특히 각종 사회적인 범죄와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극렬한 집단 행위 등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도되어 국가이미지가 매우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sup>27)</sup>

요컨대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을 요하는 점이 바로 사회문화적인(socio-cultural) 삶의 질의 변수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나 비경제적인 변수가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일반시민에게 의식구조화 되고 정치행정의 공직자에게 내면화된 가치로 승화될 때 반부패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반부패문화가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처럼 확산될 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이 제고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한다.

따라서 삶의 질의 변수에 새롭게 추가할 것은 공신력과 투명성을 개인적인 QOL과 사회적인 QOL에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이나 사회가 부패한 경우는 가장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수이다. 역으로 부패없는 사회로서 부패문화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삶의 질의 변수는 보장되고 더욱 높은 QOL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패문화(COC)와 삶의 질(QOL)은 매우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6) 한국무역협회, 2002년 10월 2일

27) 김영중, 부패문화의 치유, 전계서, pp.11-12.

<표 3-2> 한국인의 삶의 질(주요국가와 비교)

	단위	한국	순위	미국	순위	일본	순위	중국	순위
연구개발투자(2000)	억달러	122	8	2,653	1	1,486	2	108	9
R&D/GDP(2000)	%	2.653	7	2.687	6	3.118	3	1.004	27
물류비/GDP(최근)	%	16.3	-	10.5	-	11.4	-	20.0	-
컨테이너 물동량(2001)	천TEU	7,907 (부산)	3	5,184 (LA)	7	2,770 (동경)	18	n.a.	-
비행기이륙(2000)	1000회	227	18	8,766	1	642	6	573	7
원유수입(2000)	억달러	252	3	939	1	446	2	149	7
석유소비(2000)	1000bbl/day	2,146	7	19,701	1	5,528	2	4,780	3
전력생산(2000)	10억kwh	273.20	11	3,799.94	1	1,014.74	3	1,307.65	2
미국유학생수(00/01)	명	45,685	4	-	-	46,497	3	59,939	1
관광수입(2001)	10억달러	6.3	18*	72.3	1	n.a.	-	17.8	5
관광지출(2001)	10억달러	6.9	12	58.9	1	31.9**	4	13.1**	7
관광객입국(2001)	백만명	5.1	31*	45.5	3	n.a.	-	33.2	5
초고속인터넷(2001.6)	1000명당	136.5	1	30.9	40	9.30	12	n.a.	-
PC보급대수(2001)	100명당	25	25	62	1	62	1	0	50
이동전화가입자(2001)	100명당	61	22	44	27	57	25	11	44
IMD국제경쟁력(2001)	100점	56.827	27	100.0	1	54.347	30	52.2	31
UN HDI(2001)	-	-	27	-	6	-	9	-	-
부패지수(2002)	0-10	4.5	40	7.7	16	7.1	20	3.5	59
고급두뇌유출(2002)	0-10	4.70	11	8.96	49	6.0	29	3.53	4
국가이미지(2002)	0-10	5.60	29	8.04	5	5.51	31	7.42	9
삶의 질(2002)	0-10	5.64	32	8.92	11	6.15	26	4.53	38
세계 100대 브랜드(2002)	개	1	10	65	1	6	2	0	-
Fortune 500(2002)	사	12	7	197	1	88	2	11	8
도시생계비(2001)	뉴욕100	서울 90	22	뉴욕100	7	동경140	1	북경 96	12
사무실임대료(2001)	\$/m2	523	9	452	13	1,233	1	245	36
국방비(2000)	억달러	128	-	2,947	-	444	-	412	-
차치쓰레기(최근)	kg/명	400	-	720	-	410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2/10/2/ 발표자료

사회부패의 대응방안은 부패제도의 개선, 공직자의 행정윤리와 의식의 제고, 사회문화적 반부패 환경의 조성, 범국민적인 반부패 운동의 전개, 그리고 반 부패윤리교육의 강화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방지에 대한 제도는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다. 필자는 2000년도에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당시 한국 부패학회를 대표하여 공청회에 출석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후 부패방지법은 통과되었으나 외국의 관련법과 비교하면 매우 알맹이가 빠진 법이 입법되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통합부패방지법이며 그 내용은 현재 산발적으로 다원화된 부패관련법을 체계화하고 특히 로비활동의 등록과 공개법을 포함한 것이다<sup>28)</sup>.

---

28) 로비활동에 관한 관련 법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것 김영중, “로비형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법제(539호), 서울: 법제처, 2002, pp.19-33

<표3-3> 세계주요국의 부패방지법

국가 주요내용	싱가폴	홍콩	타이완	타일랜드	필리핀	인도	말레이아	미국
명칭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뇌물 방지법(The Prevention of Bribering)	감란시기 탐오치 조례(戡亂時期 貪汚治 條例)	반수뢰 및 부패방지법 (Anti-Graft & Corruption Act)	반수뢰 및 부패방지 (Anti-Graft & Corruption Act)	부패방지법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 nt Act),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제정년도	1937(1960년 개정)	1948/1971	1973	1975	1960	1947(1991년 개정)	1961 (1971년개정)	1978(1989년 개정), 1934 (1977년 개정)
주요부패사항	뇌물, 중회	마약, 여권위조, 불법이민, 신용카드사기, 뇌물 등의 중수회죄	공공재물 절취, 권력남용, 이권개입, 중수회죄	공직자에 대한 중회와 공직자의 腐敗	직접간접 친인척간의 이권개입, 뇌물등(3,4,5, 6,9조)	뇌물의 취득, 직권 남용한 특수한 이권개입의 부패	각종의 뇌물중여, 약속 또는 미수교사 공모등의 부패행위	주요공직자의 이권개입 등의 부패행위, 미국기업의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제공
처벌	최고 7년까지와 벌금 \$10,000(싱가폴달러)부과	최고 7년까지 \$100,000(홍콩화)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무기징역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	1년-10년징역 및 사형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직권남용은 1-7년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 10,000(말레이시아)이상 벌금	재산공개중 허위보고때는 \$10,000이하의 벌금부과(104,105조); 최고 5년이하 징역, 2백만 불이하의 벌금(해외 부패관행법 위반)최고 \$50,000벌금, 5년이하징역(407조)

국가 주요내용	영국	일본	한국	호주(NewSouth Wales주)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이태리
명칭	공공단체 부패행위 방지법 (Public Bodies Corruption Practices Act)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정치윤리위원회 규정 형법중 공무원 범죄	부패방지법(IAnti-Corruption Law)	독립부패방지 위원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중국행정감찰규제령, 국가공무원임시규제령, 중국행정심판령, 국가공무원징계에 관한 임시규정등	뇌물수수자처벌에 관한 포고령;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관한 조처(대통령 포고령 361호)	형법상 부패관련 법규	부패행위에 대한 형법의 특별규정
제정년도	1889,1906 (1916년개정)	1985	2001	1989	1987년 이후	1917,1992	1976(개정)	1990
주요부패사항	공직자의 이권개입 기타 뇌물수취 등의 부패	의원의 독직 및 공무원 독직 등의 부패	공직자부패 방위	관료, 정치인등 주요공직자, 그리고 기업경영자등의 부패행위	전국가공무원 대상의 부패	전공직자	공무원과 타인과 고용관계에 있는자 포함	공무원과 중외한자도 처벌
처벌	최고 7년이하의 징역	최고 7년의 징역	부패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처벌	1년이하 징역	최고사형(공개처형포함)	5년이상 사형(1991년 사형폐지)	4년이하 징역,또는NLG 100,000이하의 벌금	최고 20년 징역

국가 주요내용	싱가폴	홍콩	타이완	타일랜드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특징	①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독립기구 설치 ②엄격한 처벌 ③腐敗事件 조사국장은 사전 영장없이 구속과 사법권행사 ④腐敗事件 조사국장의 국가원수에 의한 임명과 특별한 수사권 부여	①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의 독립기구 설치 ②입법부의 원 공사기업인 정부 관료포함 ③수사 및 조사 사법권, 구속 腐敗剔扶 교육, 출판, 훈련계획 등	사법공무원 가중처벌 6개월 이내 자수한 벌죄는 감형조치 가능	①광범위한 뇌물사태를 처벌 ②부패방지위원회 (Commission Counter Corruption) 설치 및 독립적 조사, 수사 ③수상, 상.하의원장에 매년 腐敗事件결과 보고	모든 공직자는 임명 후 30일내 그리고 매년 4.15일 이전 재산의 등록과 신고의 의무화(교사 노동자 임시직 제외)	①특별법판에 의한 재판 ②공무원의 일반부패와 직권남용의 형사상 처벌 ③공무원의 재산의 포괄적 개념(중앙, 지방사법부 선거관계인, 정부투자 기관, 선거공직자, 모든 대학의 교수 조교등) ④중앙과 각주의 경계위원 (Vigilance commission)구성 부패사건 수사 의회에 보고	①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공무원 등의 포함 ②경찰, 검사등의 특별조사권 그리고 부패범죄에 대한 제포 및 집행가능	①주요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퇴직후 취업규제,정부 윤리국 설립(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특별(독립)감찰관(Independent Counsel)설치 규정 ②입법, 사법행정부의 주요공직자의 재산공개 의무화(대통령, 부통령, 상.하의원, 대법원 판사, 고급공무원등) ③재산공개 제출서의 의무화(대통령, 부통령-정부윤리국)대통령, 의원입후보자-연방선거위원회 회법부-국회 사무총장, 행정부-소속기관장, 사법부-사법윤리위원회 ④결정한 보고요구(예:봉급외소득\$200 이상, 선물\$250이상 (최근의 개정 선물\$20,년\$50) 50 ⑤미국기업과 그간부의 처벌강화(5년이하징역) ⑥국내법에 허용되는합법적인행위의 책임면제

국가 주요내용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네델란드	이태리	
특정	① 공직자의 특수한 이권개입 ② 계약관계에서 이권개입 ③ 국회의원의 정치윤리법에 의거 의회에 입임(의회자신이 처벌권을 가짐) ④ 의원의 재산 공개의 의무화	① 의원의 자속과 사임권고등 규정 ② 부패사건의 형법규정 ③ 공무원 부패의 형법규정	부패위의 임무: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 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부패행위 조사, ② 반부패교육(학교 정규교과과목) ③. 부패 예방교육 ④ 부패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⑤. 부패행위의 청문회 실시 ⑥ 부패의 포괄적 개념 규정(법8조)	①. 각급행정감찰기관의 국민부패신고 접수, 처리 특례기관의 설치 ② 부패신고에 관한 감찰기관 사무처리 절차법 ③ 정보제공자의 법적 권리 보호(중국헌법 41조 참조) ④ 지방행정부패의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 모색	① 직위 이용영리, 특혜행위 ② 공직자의 결직행위 ③ 직위와 관련된 타인의 대리인으로 영입 행위 ④ 회사 관리에 참여하거나 경제활동행위 ⑤ 금품수수 등 뇌물	① 형법규정(177조, 328조, 362조, 363조, 364조) ② 부패사건의 고지의 의무 부여(형사소송법) ③ 부패행위 조사의 국법범죄수사국의 책임	① 범죄예방과 행정개선의 동시추진 ② 비교적 중경거나 중형의 고지의 의무 부여(형사소송법) ③ 부패행위 조사의 국법범죄수사국의 책임	① 범죄예방과 행정개선의 동시추진 ② 비교적 중경거나 중형의 고지의 의무 부여(형사소송법) ③ 부패행위 조사의 국법범죄수사국의 책임

자료: 김영중, 세계주요국가의 반부패입법제도 비교, 한국부패학회보(창간호), 1997, pp.43-68)

생태계의 부패는 생태윤리와 환경윤리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생태윤리의 교육 제도화 및 강화, 생태윤리 범국민운동의 전개, 그리고 생태신학의 체계화와 교육의 강화, 생태계의 위기와 대응에 관한 홍보정책의 강화, 그리고 범 기관 적, 범국민적, 그리고 국제적인 생태계보호를 위한 전략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생태부패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규범적인 통제전략의 강화가 필요하고 국내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패통제에 협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국제간의 협약을 보면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표 3-3>과 같이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216개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해양분야 협약이 약 1/3으로 86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현재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

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등 40개의 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표 3-4> 국제환경협약 현황

구분	계	대기 기후	담수 보호	해양 어업	생물 보호	핵안전	유해 물질	기타
채택	216	12	15	86	50	13	11	29
발효	164	10	9	66	40	12	8	19

<표 3-5>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

구분	계	대기 기후	담수 보호	해양 어업	생물 보호	핵안전	유해 물질	기타
가입	40	6	-	13	7	6	1	7
발효	40	6	-	13	7	6	1	7

(2000. 4월 현재)

<자료: 김 호기, 한림연구보고서 춘천: 한림대학, 2001,pp.1-643.>

위의 표 3-4 3-5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한 것이 미흡하다. 예컨대 국제담수보호에는 가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 생태부패의 방지는 국제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관계 법규는 강화되어서 생태부패를 제도적으로 통제함이 시급하다. 환경법규를 보면 표3-5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하나 실제집행은 허술하다.<sup>29)</sup> 예를 들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6094)<sup>30)</sup> 제 3조에 의하면 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가중처벌의 경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서울: 환경부, 2003,pp.1-30.

30) <http://www.me.go.kr/>

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의견은 실제로는 법집행기관인 사법부에는 경제사범으로 인식을 가지고 온정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처벌이 약한 쪽으로 시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인식은 생태부패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요청된다. 그리고 33개의 개별적인 입법을 보다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입법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 환경관련법규>

일련번호	법률(33)	대통령령(37)	부령(36)
1	환경정책기본법 ('90.8.1 제정, 2002.12.30 2차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91.2.2 제정, 2000.8.17 3차 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2000.8.5 제정, 2002.6.3 1차개정)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99.12.31 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0.12.30 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000.12.30 제정)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2000.12.30 제정)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94.12.22 제정, 2000.2.3 전문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5.6.1 제정, 2000.8.17 전문 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95.6.10 제정, 2000.8.30 전문 개정, 2001.6.27 1차 개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98.8.11 제정, 2001.6.27 2차 개정)
4	환경분쟁조정법 ('90.8.1 제정, '97.8.28 전문개정, 2002.12.26 1차 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91.2.2 제정, '98.2.24 전문개정)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91.2.2 제정, '98.2.28 전문개정, '99.2.18 1차 개정)
5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1.12.31 제정, '99.2.8 1차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92.7.21 제정, 2002.9.11 5차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92.8.8 제정, 2002.9.11 4차 개정)
6	환경개선특별회계법 ('94.1.5 제정, '96.12.30 1차 개정)		
7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91.5.31 제정, '99.12.31 전문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7.6.26 제정, 2000.6.27 전문개정)	
8	환경관리공단법 ('83.5.21 제정, '93.12.27 2차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86.12.31 제정, '94.7.20 2차 개정)	
9	자연환경보전법 ('91.12.31 제정, '97.8.28 전문개정, 2002.12.26 3차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92.8.31 제정, '98.2.19 전문개정, 2002.12.31 4차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92.8.31 제정, '98.4.1 전문개정, 2001.10.13 2차 개정)

일련번호	법률	대통령령	부령
10	자연공원법 ('80.1.4 제정, 2001.3.28 5차 개정)	자연공원법시행령 ('80.8.18 제정, 2001.9.29 6차 개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92.5.19 제정, 2001.10.17 6차 개정)
11	습지보전법 ('99.2.8 제정, 2002.12.26 1차 개정)	습지보전법시행령 ('99.8.7 제정)	습지보전법시행규칙 ('99.8.7 제정)
1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83.12.30 전문개정, '99.3.31 3차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84.6.25 전문개정, 2000.12.8 4차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84.6.30 전문개정, '99.5.13 6차 개정)
1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97.12.13 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98.6.20 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98.7.6 제정)
14	토양환경보전법 ('95.1.5 제정, 2001.3.28 2차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95.12.29 제정, 2001.12.19 2차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96.1.4 제정, 2001.12.31 2차 개정)
15	대기환경보전법 ('90.8.1 제정, 2002.12.26 7차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91.1.28 제정, '96.8.31 전문개정, 2002.8.8 4차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91.2.2 제정, '96.9.14 전문개정, '2002.10.1 9차 개정)
16	소음·진동규제법 ('90.8.1 제정, 2002.12.30 5차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91.1.28 제정, 2000.4.22 7차 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91.2.2 제정, 2000.5.4 8차 개정)
17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96.12.30 제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97.12.31 제정, '98.12.31 1차개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98.1.26 제정, '98.12.31 1차개정)
18	수질환경보전법 ('90.8.1 제정, 2002.12.26 8차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91.1.28 제정, '96.7.31 전문개정, 2002.8.8 5차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91.2.2 제정, '96.8.12 전문개정, 2002.10.1 7차 개정)
1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99.2.8제정, 2001.1.16 1차 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9.8.6 제정, 2001.4.9 1차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99.4.9 제정, 2000.2.8 1차 개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99.8.7 제정, 2001.4.17 1차 개정)
2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02.7.13 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02.4.15제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7.29제정)
2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제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2.7.13제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02.4.15제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7.29제정)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1.14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2.7.13제정)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02.4.15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7.29제정)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법률('91.3.8 제정, 2002.12.26 4차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법률시행령 ('91.9.7 제정, '97.8.11 전문개정, 2002.11.14 3차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법률시행규칙 ('91.9.9 제정, '97.9.18 전문개정, 2002.12.14 5차 개정)

일련 번호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24	폐기물관리법 (’86.12.31 제정, ’91.3.8 전문개정, ’99.12.31 4차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87.4.1 제정, ’91.9.26 전문개정, 2002.3.18 6차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87.5.30 제정, ’96.2.5 전문개정, 2002.8.7 6차 개정)
2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2.12.8 제정, 2002.2.4 전문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93.6.24 제정, 2002.12.18 전문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 칙 (’93.7.31 제정, 2002.12.30 전문개정)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 관한규칙 (’93.8.17 제정, ’99.2.19 2차개정)
2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95.1.5 제정, ’99.2.8 2차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시행령 (’95.6.30 제정, ’97.12.31 전문개정, ’99.6.30 1차 개정)	
2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 법률 (’92.12.8 제정, 2001.1.16 3차 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 행령 (’94.5.28 제정, 2001.7.16, 4차 개정)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 등에관한법률 (2000. 1.21 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 한법률시행령 (2000.7.10 제정)	
2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0.8.1 제정, ’96.12.30 전문개정, ’99.2.8 1차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91.1.28 제정, ’97.6.26 전문개정, 2002.8.8 3차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91.2.2 제정, ’97.7.26 전문개정, 2002.10.1 3차 개정)
30	한국자원재생공사법 (’93.12.27 제정)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94.3.29 제정)	
31	수도법 (’91.12.14 전문개정, 2002.12.26 6차 개정)	수도법시행령 (’92.12.9 전문개정, 2001.9.29 5차 개정)	수도법시행규칙 (’92.12.15 전문개정, 2001.10.4 4차 개정) 상수원관리규칙 (’92.12.15 제정, 2002.12.2 3차 개정)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94.9.13 제정, ’99.7.19 3차 개정)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94.8.9 제정, ’97.9.3 1차 개정)
32	하수도법 (’66.8.3 제정, 2001.3.28 7차 개정)	하수도법시행령 (’69.12.1 제정, 2001.9.29 6차 개정)	하수도법시행규칙 (’71.6.15 제정, 2001.10.5 5차 개정)
33	먹는물관리법 (’95.1.5 제정, 2000.1.7 3차 개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95.5.1 제정, 2000.7.1 4차 개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95.5.1 제정, 2001.7.23 5차 개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95.5.1 제정, 2002.6.21 6차 개정)

일련번호	법률	대통령령	부령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행자부소관) (’98.2.28 전문개정, 2002.8.8 4차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98.2.28 제정, 2003.6.27 8차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90.3.22 제정, ’96.12.16 1차 개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99.12.9 전문 개정)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95.1.14 제정, 2001.9.3 2차 개정)

자료: <http://www.me.go.kr/>

#### IV.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반부패 패러다임: 생태 윤리적인 접근

한마디로 21세기 초 현재로 생태계가 끔찍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생태계의 부패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마디로 공멸 할뿐이다. 생태계의 부패를 일으킨 주범은 인간이다. 생태계의 부패 주범은 개인도 되나 많은 경우 국가나 사회조직이 주범으로 책임을 져야한다.<sup>31)</sup> 개발이라는 이름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그리고 조화와 균형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인간은 재난과 종말을 독촉하고 있다. 생태계의 종말은 바로 인간의 종말을 가져온다. 궁극적으로는 만물의 회복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질서가 이어질 수 있다. 몰트만이 지적한 하나님의 자기영광(Selbstverherrlichung)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우주만물에 대한 종말관적인 구속도리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 성서적인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21:1 이하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는 묵시적인 계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꿈을

31) H. 요나서는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를 기술을 죄악시키는 생태학적 윤리주의나 환경문제를 기술적 문제로만 파악하는 개량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권력을 억제하는 사유의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H.요나스(이진우역), 책임의 언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울: 서광사, 1994, pp. 1-374.

32) Jurgen Moltmann, Das Kommen Gotts, 김관진 역,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적 종말론 서울: 기독교서회, 2000), pp.546-547.

함의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생태부패를 방지하는 전략으로서는 보다 강화된 법규범이 필요하다.<sup>33)</sup> 예컨대 내년부터 뱀과 개구리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국내에 서식하는 파충류·양서류 43종 전체가 포획 금지대상이 된다. 6개월 후에는 ‘땅꾼’이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셈이다. 뱀과 개구리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증식하거나 일부 수입된 살모사·참개구리 등은 판매가 허용돼 뱀탕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야생 포유류·조류 95종을 먹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인공 증식은 예외로 했다. 특히 뱀탕이나 야생동물 고기를 먹다가 단속반에 적발돼도 ‘인공증식 증명서’나 시·군별 수렵장에서 허가를 받고 포획했다는 ‘수렵 동물 증명서’만 제시하면 문제가 없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194종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보호 중 가운데 13종을 제외하고 48종을 추가해 모두 229종의 야생 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50종과 2급 179종으로 재분류했다. 1급엔 시라소나, 얼룩새 코리꾸리, 남방방개, 칼세오리 옆새우 등이, 2급에는 가시연꽃·토끼박쥐·자라·흑비둘기, 왕사슴 벌레, 참 달팽이 등이 포함됐다.

사회부패와 생태부패 모두 미래사회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파괴하는 무서운 역기능을 초래한다. 사회부패가 심한 나라는 생태부패가 역시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는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존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탐욕과 남용의 결과는 생태계의 부패를 초래하는 원천적인 주범이다. 예컨대 악취나는 공장 폐수의 무단 방류는 사회부패와 생태부패의 두 카테고리(category)를 넘나드는 명백한 부패사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가짜 식품을 사용하여 돈을 벌이겠다는 악덕기업인은 단순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가 아니라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부패 범이요 또한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여 생존의 원리를 위협하거나 박탈하는 생태 부패 범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확고한 반사회부패의 윤리의식과 반생태부패의 생태윤리는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패방지의 패러다임과 전략수립에 보다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33) 중앙일보, 2004. 8. 12.

## V. 요약과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생태계의 부패와 사회의 부패를 비교하여 보았다. 문제는 양자가 다 위험수위에 오른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두 부패는 결코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고리(connection)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양자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이면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라는 사실이다. 즉 범람한 사회부패는 생태부패를 촉진시키거나 구조화된 생태부패는 사회부패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적 파국이 오기 전에 획기적인 예방과 치유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인간의 가치관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사랑과 섬김의 핵심적인 영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당위성에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J. Moltmann의 지적대로 우리의 환경위기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위기가 아닌 인간자신의 위기에 있음을 직감할 때<sup>34)</sup> 사회적 부패와 생태계의 부패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독립변수이면서 종속변수이며 상호 함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부패가 극소화된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현재를 의미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전제한다. 곧 영광의 나라는 모든 창조 안에 있는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거하심이다.<sup>35)</sup> 이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함께하며, 각 피조물은 자기 방식대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열락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영광의 나라에서도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써 존재하며, 하나님의 현재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재화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과 생태학적 프로그램이 결합되어져 있다.<sup>36)</sup>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의 백성에게는 물론 그의 땅에게는 평화(shalom)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세계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 세계의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조이며, 새로운 하늘과 땅을 기다리는 민중과 생태계의 메시아적 희망을 나타내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아적 창조 신앙을 추구한다.

34) 김 도훈, “21세기 신학으로서의 생태신학”, 로고스 10, 1999, p. 2.

35)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1 p.223.

36) 몰트만, 예수그리스도의 길, 서울:대한 기독교 서회, 1991. p.179.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79.
- 김균진, 『생태계위 위기와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도훈, 『21세기 신학으로서의 생태신학』, 로고스 10, 1999, p. 2.
- 김영중, 『부패학』, 서울: 승실대출판부, 2001, pp.1-103.
- 김영중, 『부패문화의 치유: 삶의 길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8-1(2003.1), pp.1-27.
- 김영중, 세계주요국가의 반부패입법제도 비교, 한국부패학회보(창간호), 1997, pp.43-68)
- 김영한, 『생태계의 위기와 생태신학, 생태윤리』, 한국기독교 연구논총 7집,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 문화연구소, 1995, pp. 52-82.
- 맹용길, 『자연환경과 윤리』, 쿰란, 1994
- 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1 p.223.
- 몰트만, 『예수그리스도의 길』,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91. p.179.
- 성종현, 『성서헬라어사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이정배, 『생태학과 신학』 : 생태학적 정의를 향하여, 종로서적, 1989
-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대학기독교서회, 1999
- 이정배편저, 『창조신앙과 생태학(목회자를 위한 창조신앙 연구)』, 설우사, 1987
- 이진우,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6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생태계의 보존』,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 한국무역협회, 2002.10.2.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서울: 환경부, 2003,pp.1-30
- 한겨레신문, 1995.5.27
- 중앙일보, 1997. 10. 01
- 중앙일보, 2004. 2. 13, p.12.
- 중앙일보, 2004. 8. 12.
- 미션바이블

2. 외국문헌

Aftenposten, 2001. 07. 05

Attfield, Robin,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Anderson B. W.,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Old Testament Perspectives*, Minneapolis, 1994

Boff, Leonardo, 생태신학,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6

Eppler, E. , 이정배역, 『인내의 한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Granberg-Michaelson, Weseley, *Reaeming the Creation*, Geneva : WCC Publications, 1992.

Hendry, G., 강성두역, 『자연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3

Hesel, Dietert, ed., *For Creation's Sake, Preaching, Ecology and Justice*, Philadelphia : The Geneva Press, 1985.

Jonas, Hans,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울: 서광사, 1994

Kim, Young Jong,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Seoul: Hyung-Seul Publishing Co.

McFague S.,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Philadelphia, 1988

Moltmann, Jurgen Das Kommen Gotts (김균진 역), 『오시는 하나님』 : 기독교적 종말론 서울: 기독교서회, 2000), pp.546-547.

Moltmann, Jurgen,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Nash, J. A.,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이문균 역, 기독교 생태윤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Santmire H. P., *The Travail of Nature. The Ambiguous Ecological Promise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1985

Santmire, H. P., *Nature Reborn. The Ecological and Cosmic Promise of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2000

Schaeffer, F. A.,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김진홍역, 『환경오염과 인간의 위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Steck, O. H., 박영옥역, 『세계와 환경』,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http://www.me.go.kr/>

<http://myhome.netsgo.com/greeners/enviro/Warming.htm>

<http://www.kyoubuk-tti.or.kr/self/courseware/aab/aab00r45.htm>

<http://www.magazinev.com/news0309/0309environment1.htm>

[http://www.uw21.net/uiwang\\_html/sub8/1-9-2a.htm](http://www.uw21.net/uiwang_html/sub8/1-9-2a.htm)

[http://www.uw21.net/uiwang\\_html/sub8/1-9-2b.htm](http://www.uw21.net/uiwang_html/sub8/1-9-2b.htm)

[http://myhome.hanafos.com/~byungkej/enviro\\_m/azprojec\\_html/wasser.htm](http://myhome.hanafos.com/~byungkej/enviro_m/azprojec_html/wasser.htm)

저자약력 : 저자 김영중은 부산대학교 출신으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숭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부패관련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초대 한국부패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패연구센터 소장직도 맡고 있다.